

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심 사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4. 9(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4. 19(목)

다. 상정일자 : 2012. 4. 26(목)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)

- 동계올림픽추진단 신설 등에 따른 일반직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기구 5급 정원의 존속기한을 부칙으로 정하고자 함.
- 일반직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변경(안 별표2)
 - 8급 : 24%이내 → 25%이내
 - 9급 : 11%이상 → 10%이상
- 일반직 직급별 정원 조정(안 별표3)
 - 5급 : 24명 → 25명(+1)
 - 6급이하 : 452 → 451명(△1)
- 한시기구 5급정원의 존속기한(안 부칙 제2조)
 - 2014년 12월 31일까지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추진단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및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, 일반직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하고,
 - 일반직 정원 중 5급 1명을 증원하고,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는 것임.
- 본 조례안은 동계올림픽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한시기구 5급 정원에 대하여는 강원도에서 승인 받은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